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7월 26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3년 7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 9.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3. 11. 21.)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2023. 11.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문, 영문,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령을 근거로 발행된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문서로 의제함으로써 모바일상의 운전면허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규찬)

개정안은 국가기관·공공단체·기업체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신청자에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신분확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형법 제225조¹⁾, 제229조²⁾, 제230조³⁾ 등 공문서에 관한 죄의 적용에

1)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있어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하려는 것임.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으로서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용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3)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안반영 폐기